

프랑스 공기업의 최근 변화에 관한 보고서

Nicole Maggi-Germain (파리 1대학 ISST(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법 전임강사)

■ 머리말

프랑스의 공기업(entreprise publique à statut)은 유럽연합법이나 비교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용어로서 상당히 이질적인 경제적 법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개별 주주 또는 대주주인 공기를 뜻하며, 모든 직원은 비교섭적 편무 행정법규의 통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몇몇 경제적 특수성(공기업이 속한 부문도 경쟁에 개방될 수 있다) 외에도 다양한 법률상의 지위(상공업부문 공기업(EPIC), 주식회사 등)을 가지며 공통적으로 공무를 중심으로 한 특수한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은 로마조약과 최근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특정 조건하에 자유경쟁 관련 유럽연합법의 적용제외를 허락하는 경제공익업무(S.I.E.G.)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유도하는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연합법이 강요하는 공기업의 독점 개방압력 아래 힘을 잃게 되었다.¹⁾ 주요 독점 부문(예를 들어 프랑스전력공사

1) 유럽연합법 제86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유경쟁 관련 규정적용 제외의 근거를 확실히 증명하는 경제 공익업무 운영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 체결시 도입된 제16조는 경제 공익업무의 개념을 유럽연합 범위로 확대시켰다. “제73조, 제86조, 제87조에 위반되지 않고, 경제공익업무가 유럽연합의 공통가치 중 하나로서, 유럽연합의 영토적·사회적 일관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참작하여,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 안에서, 본 조약의 적용가능 범위 안에서, 이 업무가 실행가능 조건과 원칙의 기반에서 운영되도록 주의한다.”

(EDF), 프랑스가스공사(GDF), 프랑스국영철도공사(SNCF), 우체국(La Poste) 등은 체제와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반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치를 기대하는 철도는 독점으로 남았지만 여타 공공서비스는 경쟁에 개방되었다(이것은 개방네트워크 규정(Open Network Provision)의 원칙이다). 유럽연합의 압력 아래 우선적으로 기반설비 운영이 경영관리로부터 회계분리(unbundling)가 이루어져 기업이 활동분야별로 분리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오늘날 이 같은 분리는 유기적(동일 기업 내부에서 여러 부문으로 분리되는 경우) 혹은 제도적(서로 다른 기업으로 분리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철도 운송의 경우, 프랑스철도망관리공단(RFF)이라는 상공업기관이 기반시설 관리를 맡고 열차 운행은 SNCF가 맡고 있다. 이런 새로운 분리는 내부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독립된 부문들이 '고객과 공급자'의 계약으로 공식화된 서비스 교환으로 운영되어 각 부문들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공급된 서비스에 대해 보수가 따른다. 기업 내부에서조차 모든 서비스(열차 유지보수, 승차권 판매, 객실 준비)가 유료다. 기업의 각 부문에게 책임을 지우고 경쟁의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EDF와 GDF의 경우 전기·가스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사업에 관한 2004년 8월 9일자 법령으로 인해 국가가 자본의 70% 이상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에너지시장의 자유화를 준비하게 되었다. 전기·가스의 운송관리를 맡을 두 개의 계열사가 창립되었다. 현 법안은 전기·가스산업공단(IEG)의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퇴직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재정적 독립성을 지녔으며 IEG연금서비스의 위험부담을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다. 결국 가입자는 일반제도²⁾와 보충제도³⁾ 양쪽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신 일반제도와 보충제도가 IEG의 모든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⁴⁾ 이것은 궁극적으로 EDF, GDF 직원들의 연금 운영을 일반제도로 완전히 이전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기업의 조직이 새롭게 변하자 인사규정 등에 표현되는 법의 영속성과 계약에 대한 더 큰

2) 국가노령보험기금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CNAV)

3) 기업연금연합회가 관리하는 ARRCO, AGIRC

4) 이 같은 재정적 이전은 일반제도와 보충제도가 제공하는 지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응성(réactivité)’ 추구, 공공이익과 경쟁 압력간의 긴장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이 같은 긴장감은 노동법 조항 적용 분쟁의 증가로 표출된다. 이처럼 자급자족에 가까운 법률 시스템의 근거에 의문이 던져지고 공통법 적용조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소송사건이 발생하자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필자는 피라미드식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구조(II)가 더 산만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신구조(III)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EDF와 GDF, 그리고 SNCF의 노사관계를 분석(III)하면 여타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현재 진행중인 개혁들에 부여해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가 얼마나 국가와 기업 임원단, 노동조합들 간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I. 피라미드식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공기업의 탄생은, 국가관과 국가가 경제부문에서 행해야 할 역할의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공권력 국가를 확립하는 데 이용되었다. 국가는 당시 전쟁과 전후 재건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입주의 정책을 합법화하고 공인하는 법률 도구를 지니고 있었다. 몇몇 상공업 부문이 공공서비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개입이 합법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한편 인사규정을 편무규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 기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반법 및 노사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일반법의 예외적 예속관계’라고 칭하게 되었다. 파업권 행사를 저지하거나 혹은 제한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의해 거부되었던 20세기 초 인사규정 관련 계획안 또한 국가가 직원들에게 행할 수 있는 독단적 처사에 대응할 근거가 되었다. 이 명목으로 결국 노동조합은 파업권 규제 문제를 미결로 남긴 채 계획을 수락했다. 공공서비스가 국가 개입을 정당화시키면서 동시에 제한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하나의 화해수단으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렇게 하여 법규를 둘러싸고 상하 계급을 형성하며 세워진 법질서 내부에 피라미드식 중앙집권적 노사관계 체제가 생겨났다. 인사규정은 이익 대립의 논리, 계약상의 논리와는 반대로 공공서비스가 점점을 이루는 가치선상에 놓였다. 그 결과 노사관계가 상호성 논리에 각인되었다. 공기업 근로자에게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고⁵⁾ 기업은 그에게 일자리와 보수, 개인적으로 어려

은 상황일 때 특별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프랑스 사회법이 민간기업에서 경쟁조건을 평등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면 공기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차원만 고려하다가 기업의 비대해진 요소, 즉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 내부의 노사관계가 각 기업 고유의 노사조정기구,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통해, 승인의 과정을 밟아 나름대로 특수성을 획득했다. 이런 조정위원회는 역사상 편무규정으로 설립되어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교섭을 배척해 온 법률시스템의 제도적 대체물이다. 조정위원회는 각 대표 단(노사 대표)에게 표현방법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록 법률상으로는 자문의 자격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진정한 권력에 대응하는 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일방적 결정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며 노사관계가 연속성을 띠게 하고 직원들과 노동조합을 법규의 ‘적응’ 현상이라고 칭할 만한 것으로 이끈다. 여기서 단체교섭은 보조적 지위만 획득했을 뿐이다. 1982년 11월 13일자 법률 제9조에 근거한 노동법 제 L. 134-1조 제3항에서 공기업들이 특정 조건하에 인사규정을 단체교섭을 통해 완성하도록 허락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직원들의 지위를 항목별로 진술한 단체교섭은 법률상 유효하다. 그러나 체결된 교섭안은 필연적으로 법규를 보충하는 것이며 법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와 국가의 자본 철수를 동반하는 공기업의 법률상 지위의 변화는 일반법에 동조하기 위해 특수한 노사관계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일반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장과 가치가 근로관계 형성의 지침표가 되면서 구가치제도와 충돌한다. 동시에 공기업의 변신 계획안을 둘러싼 반대가 인사규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일부 노동조합들은 인사규정을 민영화로 함락되기 직전 마지막 보루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5)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어서 상위 직급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고 인사규정으로 결입이 금지되어 있다.

6) 노사협상 및 단체노사분규 관련 규정, 1982년 11월 14일자 관보(Journal Officiel), p. 3414

II. 더욱 산만한(혼란스러운?) 법률 규범의 제조기관

EDF, GDF 같은 공기업의 자본 개방으로 시작된 공기업의 독점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기초를 둔 유럽연합 건설과 단독시장의 경제원리에 근거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개방경쟁시장 시스템의 우위를 재차 수긍함으로써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전기, 철도, 항공, 통신 같은 주요 독점 부문은 유럽연합법과 충돌한다. 유럽연합법 제31조는 관련 공기업들의 개혁을 강요하는 반면 제87조 제1항은 형태를 막론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공지원의 양립 불가능성 원칙을 세웠다. 제82조와 제28조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처벌하고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그와 동등한 효과의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1993년 5월 22일자 경쟁 정책에 관한 제 22회 보고서를 통해 공공서비스 운영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경제조직 방식이 “국경선에 따른 공통신장 분리에 근거하므로 경쟁관련 유럽연합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감을 표시했다.

유럽연합에 의해 개시된 공기업 독점시장의 개방은 몇 가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개혁의 주요 방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역할을 결정짓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유럽연합 건설이 회원국에게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제한을 강제로 부여하지만 개혁을 합법화하는 ‘권위의 논거’로도 사용되고 있다.⁸⁾ 노동조합이 오래도록 유럽연합 차원을 고려해보지는 않았지만

7) 이것이 초기에는 탈규제화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규제화’나 다름없다. 이 부문이 경쟁에 개방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신, 우정사업, 철도운송, 전기, 전자 부문에 채택된 여러 법령들이 이 분야를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판례집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의 시장개방정책은 회원국의 권한을 유럽연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자유경쟁의 원칙이 결국 회원국의 실질적 권한을 유럽연합기구로 이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8) 한 예로 다음은 경제위원회 서시장 클로드 르노와르 씨가 2004년 6월 15일 국회의 화요 2차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2003년 12월 16일 발표한 결정에서 국가의 상공업계 공기업에 대한 묵시적인 보장은 자유경쟁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재정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의 2004년 5월 19일 장관회의 발표문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현 전기·가스 공공서비스 관련 법안은’ 자국내 전기 및 천연가스 시장 관련 유럽연합 공통 규정들이 예상하는 대로 기업에게 고급 서비스 수준과 제3기업들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운송 및 유통망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조직 구성의 바탕(주춧돌)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엔 전략에 백분 침착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유럽연합의 개념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변화가 유럽연합 규범이 얼마나 '복잡한'지 더 잘 이해시켜 준다면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법률 제정기관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 같은 일부 노동조합들에게 치명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법이 탈중앙집권화와 연관된 공기업의 자본개방에서 차지하게 될 자리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개입이 생겼다. 이전의 독점시장 개방 시에도 그런 이유에서 조정기관이 설립되었다. 2000년 2월 10일자 법령으로 설립된 에너지조정위원회(CRE)는 필요시에는 행정 관할부에 상소될 수 있는 처벌을 내리며 자유경쟁 활동 조건을 보장하는 임무를 지녔다. 또한 완전 보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내용을 평가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⁹⁾ 여타 조정기관처럼 하나의 독립된 행정기구인 것이다. 2000년 2월 10일자 법령 제35조는 “전기조정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직원은 정부나 여타 기관, 사람, 기업 또는 기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공평하게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 시장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준공무’라고 불려질 만한 것이 창설되면서 법에게 지위였던 지위와 역할에 몇 가지 변화를 불러와 이제는 법이 경제적 변화에 따르는 단순한 도구가 되었다. 결정 기관이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결정 과정에 힘을 발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특히 노동조합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제는 국가의 개입이 규제보다는 조정을 위한 경우일 때가 더 많다. 계약이 법을 대체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때 취하는 법률적 형태도 변한다. 2004년 8월 투표에 붙여진 전기 및 가스 공공서비스 관련 신규 법안은 공공서비스의 임무 실행 방식과 목적을 규명한 계약이 한편으로는 국가와 EDF, GDF 간에 체결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공공서비스 임무를 맡은 전자·가스 부문의 여타 기업들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실행자(더 이상 공기업이 유일한 공공서비스 실행자가 아니다)의 법률적 지위와 공공서비스 임무 간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다.

9) 비연결지역(DOM-TOM과 코르시카 섬에서의 최대 판매가가 CRE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의 생산 초과 비용 또는 전기공급업체들이 빈곤층을 위한 대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과비용

10) 총 6명의 임원들 중 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은 법령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세 명은 각각 국회의장, 상원의장, 경제사회위원 위원장에 의해 임명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은 공기업 내부에서 고용관계법의 근원으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개혁에 노동조합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책결정에 더 큰 합법성을 부여하는 주제상 중요한 협약들이 체결되었다.¹¹⁾ 그래서 2004년 10월 28일 SNCF와 CGT(SNCF내 다수조합)는 쌍방의 표현대로 “빈번한 대립 문화를 화해 추구와 교섭 문화로 대체”할 수 있을 분쟁예방과 노·사 대화 개선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전통적으로 반대 문화로 낙인찍힌 노동조합에게 변화 그 이상의 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개혁과 추구되는 목적에 서로 같은 뜻을 부여하는지 확신이 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Ⅲ. 긴장된 노사관계

공기업 내부의 노사관계를 분석하면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함을 알 수 있다. 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교섭 상대이다. 기업임원단의 중재는 기업의 지위에 관련된 기초적 문제들이 관건일 때처럼 극심한 분쟁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곳과 합의된 약속의 가치와 힘이 불분명해졌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은 불이행시 합의한 자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협상에 만족해야 하며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협약은 매우 불확실하고 정부의 변화에 좌우된다. 목표는 절대 명확히 표명되지 않고 각 정부마다 예정된 개혁을 사회적 보상으로 ‘위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혁의 결과 및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완곡화 정책’이라고 평할 만한 것을 사용한다.¹²⁾ EDF와 GDF의 퇴직금제도 개혁은 공기업의 지위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되었다. 퇴직금

11) 프랑스 국회의 전기·가스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사업에 관한 논의 중 경제위원회 서기 장 클로드 르느와르 씨의 발언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퇴직금 제도에 관한 제안은 2003년 1월에 노동조합과 서명한 협상내용을 단순히 옮겨 놓은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2) 당시 재경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씨는 국회의 전기·가스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사업에 관한 논의 중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법안은 본질, 즉 기업의 양호한 재정, 자주성, 공공서비스의 가치, 특별 퇴직금제도, 인사규정 등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해 부차적인 것, 즉 EDF와 GDF의 법률적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EDF, GDF의 주식의 15%가 직원들에게 제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도 개혁으로 인해 공기업은 연금을 예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관들은 민영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EDF와 GDF의 자본개방이라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민영화라는 용어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대다수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서비스의 존속 여부를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 있는 용어 사용은 피하자는 의도이다. EDF와 GDF의 지위 변화와 함께, 두 기업 내부의 노사협약 체결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사이 4,700명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 이로 인해 겉으로 표명된 정치적 의지와 지금부터 행해질 개혁들 간에 괴리가 생겼다. 지금부터 행해질 개혁들은 겉으로 전혀 티나지 않는 민영화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화를 인도한다. 민영화가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공포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직원들에게 이 같은 괴리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이중적인 언어는 다수의 반대를 불러왔다. 최근 'GDF 자본의 소수 개방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발표되고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와 피에르 가도넥스 EDF 사장의 2005년 말 EDF의 증시 상장 계획에 대한 공동 발표가 있자 두 기업 내부에서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이 같은 이중적 언어는 과격한 대응까지 야기시켰다. EDF와 GDF에서 1980년대 말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단전¹³⁾ 같은 반대시위가 최근에 다시 등장했다. 2004년 5월과 6월에는 '에너지 사용의 권리'를 내세우며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겼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로뱅 데 브와(로빈 후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응행위도 나타났다. 국제 기술자, 전문가, 연구원연합(Aitec)에서 서버를 공급하는 '전기·가스 레지스탕스'라는 웹사이트¹⁴⁾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자리로 만들어졌다. 다수가 이런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진행되던 몇몇 국면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던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반체제노조인 SUD(단결·연대·민주)는 다수 조합 CGT가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노사분규(주 35시간 근무 협정, SNCF의 노사충돌 예방 및 노사대화개선 협정) 과정에서 SNCF에서는 SUD-Rail

13) 2004년 6월 6일과 7일 밤새 파리지역 철도선 전기 공급 일부가 끊겨 50만 명의 SNCF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14) www.globenet.org/aitec/reglindex.htm

로 EDF, GDF에서는 SUD-Energie로 점점 세력이 커졌다.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보자면, 노동조합들이 그런 변화에 대응하여, 그들의 기본 취지와 '괴리'에 맞서, 채택한 전략에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그래서 EDF와 GDF 직원들은 2003년 1월, 투표를 통해 CGT에너지부문연합회장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조를 종용하던 퇴직금제도교섭안을 반대했다). 공기업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야 정부와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다. EDF와 GDF이 민영화되는 것이 노조에 의해 '받아들여진(교섭 초기에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단하게 법률안 철회였다)' 이유는 (자본 대부분이 국가 소유임에 변화가 없는) 한계가 명백한 개혁이었고 인사규정을 민영화 이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지위 전환 원칙이 수용되었다면 지위 전환 실행은 정부가 몇몇 선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¹⁵⁾ **KLI**

15) 2004년 9월 24일자 <르 몽드>지에 실린 CGT연합 크리스토프 르 뒤구 총무의 발표는 다음과 같다. “물론 법안으로 인해 EDF의 지위가 변경되고 중국에는 자본 개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간 생략] 정부는 기업의 산업전략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논의할 수 있고 다양한 재정지원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재정장관은 2004년 6월 15일 전기·가스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 산업 관련 입법안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변화야말로 법률이 예상하는 유일한 것이다, EDF와 GDF는 기업이지만 지분이 100% 국가 소유인 기업이 된다.”